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453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출일자 : 2016년 10월 31일
- 라. 회부일자 : 2016년 11월 3일

### 2. 제안이유

-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필요 인력을 적기에 보강하고, 소방공무원·연구직 보강을 위해 서울시 총 정원을 17,471명에서 17,521명으로 50명 증원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민원관리 등 분야별 인력보강을 위해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 10명을 증원하고, 감소 기능 등에 대해 집행기관 정원 7명, 합의제 행정기관 정원 3명을 감축함.
- 나. 감염병 대응(5명) 및 실내공기 오염도 측정·검사(5명) 인력 10명을 증원하고, 사업소 기능 감소 분야 일반직 정원 5명 감축함.  
※ 감염병 대응 인력은 '지자체 감염병 대응 조직 개편방안'에 의거 순증
- 다.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 45명 증원

####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윤 병 국)

##### 가. 개정안의 개요

- 본 개정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 보강과 감염병과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정원 변동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공무원 총 정원을 17,471명에서 17,521명으로 50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임.

〈총 정원 17,471명 → 17,52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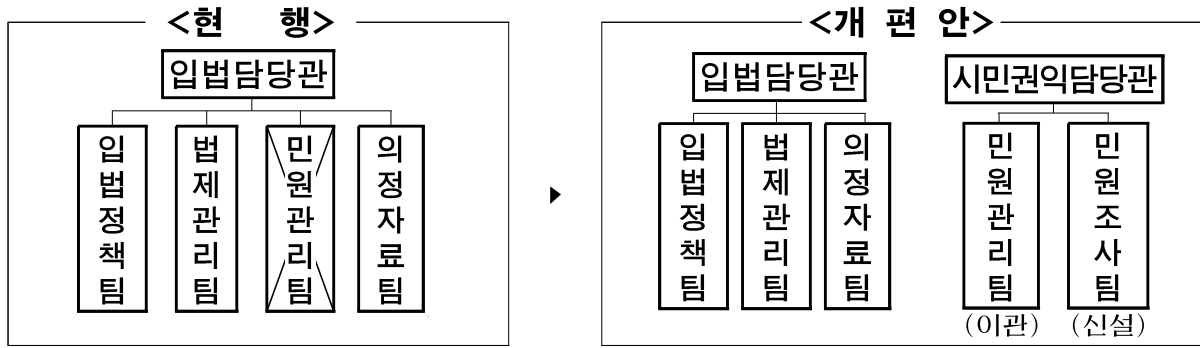
구 분	총 계	집행기관	의회사무기구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합의제 행정기관
개정 전	17,471	9,717	290	6,820	491	153
개정 후	17,521	9,715	300	6,865	491	150
증 감	-	△ 2	+ 10	+ 45	-	△ 3
사 유			시민권익담당관 신설 등 의회 역량강화(+11) 취퇴기능 감축 (△ 1)	현장대응력 강화(+45)		

- 구체적인 변동사항은 민원관리 등 분야별 인력보강을 위해 의회 사무기구 정원 10명을 증원하고, 감염병 대응인력(5명)과 실내공기 오염도 측정·검사(5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소방공무원(45명)을 증원하고자 함.
- 또한, 기능감소에 따라 집행기관과 합의제 행정기관 등의 정원을 감축해 서울시(이하 “시”) 총 정원은 50명 증원됨.

##### 나. 시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보강(안 제2조, 안 별표 3)

- 안 제2조와 별표 3에서 현장조사가 요구되는 다양한 민원의 적극적 처리와 이를 통한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시의회사무처 내 민원처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공보실 인력 보강 등 시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자 함.

〈시민권익담당관 시설계획〉



※ 증원 : 5명(행정4급 1, 행정5급 1, 행정6급 1, 행정7급 2)

재배치 : 5명(입법담당관에서 민원관리팀 이관 임기제행정5급 1, 행정6급 4)

- 시의회 전체적으로는 기능이 쇠퇴하는 위생직렬 정원 1명을 감축하고, 시민권익담당관 신설 등에 소요되는 11명을 증원해 실질적으로는 10명을 증원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는 사무처내에 시민권익담당관을 신설해 기존의 1실 4담당관을 1실 5담당관으로 확대하고, 4급 1명을 포함해 이에 필요한 인력 5명을 증원하고, 5명은 기존 입법담당관의 인력을 재배치 함.
- 이 밖에도 의회의 홍보와 의정활동 대응력 강화를 위해 공보실(2명)과 운영전문위원실(3명) 및 시설관리분야(1명)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해 변화하는 의정환경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자 함.
- 이는 의정활동 지원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최근 의회를 통한 시민들의 직접적인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한 적극적인 대응조치로 이해됨.

**다. 실내공기질 오염도 측정 및 감염병 대응조직 기능강화를 위한 인력 증원(안 제2조, 안 별표 3)**

- 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른 실내공기 오염도 검사 비율 상향으로 측정과 검사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환경연구사 5명을 증원하고자 함.
-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올 12월부터 「실내

「공기질 관리법」으로 변경되면서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등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관리하던 공중이용시설이 다수 이관되어 관리대상에 추가되었음.

- 이에 따라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지침」을 변경해 실내공기 오염도 검사 비율을 상향(10% → 20%) 조정하였으며, 관련 업무가 대폭 증가하였음.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군 및 검사 현황〉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대상시설	다중이용시설 (4,375개소)	다중이용시설 (4,525개소)	다중이용시설+ 공중이용시설(12,322개소)
	신축공동주택	신축공동주택	신축공동주택
	도시철도	도시철도+철도, 시외버스	도시철도, 철도, 시외버스
검사비율	10%(436개소)	15%(656개소)	20%(2,463개소)

- 기존 10명의 검사인력(환경연구사)으로는 대상시설에 대한 법적 검사 비율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5명의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조치는 관련법령 개정이나 검사대상 시설의 증가를 포함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 또한, 시는 신종 감염병(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발생 이후 국가방역체계 개편과 연계한 지자체 감염병 대응 조직 개편방안에 따라 감염병 관리 강화와 전문성 제고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는 감염병 관리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본청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감염병 검사량 증가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인력(보건연구사 4명) 등 5명을 증원하려 함.
- 행자부의 조직 개편 방안에 따라 국가방역체계와 연계된 서울시의 감염병 대응 조직 개편 사항은 주요 감염병의 증가와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 해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시의 적절한 인력 증원 계획으로 판단됨.

- 다만, 조직의 확대가 시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상승으로 직접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경험을 고려해 현장 인력 중심으로 시민들의 체감 서비스가 증가되는 조직 관리에 나서야 할 것임.

**라.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증원(안 제2조, 안 별표 3)**

- 개정안은 급증하는 각종 재난에 대한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시 급성이 높은 현장근무 소방공무원 인력을 증원해 대시민 서비스 향상과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업무부담이 과도한 구급대 인력 36명(소방사 36)을 증원해 2인 구급대 인력을 3인 구급대로 전환하고, 각종 신규사업에 따른 행정업무 수행인력 6명(현장대응단 4명, 종합방재센터1명, 소방학교 1명)을 증원하고자 함.
- 시는 지난 2009년 이후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서비스 질 개선을 목적으로 3교대 근무를 위한 인력증원을 23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당초계획보다 1년 빠른 2014년 12월 3교대 근무를 위한 인력증원을 완료하였음.
- 이후 화재진압을 비롯한 각종 업무 수행과정에서 순직하거나 각종 사고를 당하는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지속되면서 소방공무원의 사기양양과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소방 서비스 제고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구급대 인력과 소방서 예방인력 등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번 증원으로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증원은 완료될 예정임.

〈소방공무원 증원 현황과 사유〉

구분	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증원(명)	1,495	300	173	251	308	144	173	146
증원 사유		3교대	3교대	3교대 :152명 강북서신설 :99명	3교대	3교대 :135명	3교대 :157명 쌍문센터 :16명	구급대 :93명 예방인력 :53명

- 소방공무원의 3교대 시행으로 인해 소방공무원의 정원이 해마다 증가하여 서울시 전체 공무원 정원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확대된 사정을 고려해 향후 소방 업무 중 단순·반복적인 사무를 자동화하거나, 관련법령 개정 건의 등을 통해 벌집제거나 동물구조와 같은 업무에 대한 출동제한, 소방기구의 광역화 등을 포함한 소방인력의 효율적 운용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마. 인건비의 증감

- 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17,471명에서 17,521명으로 총 50명 증원하고, 일반직 15명에 대한 일부 조정에 따라 이번 정원조정안은 일부 인건비의 변동이 발생함.
- 시의 추계에 따르면 소방공무원과 연구직 증원, 일반직 공무원 조정에 따라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기준에 따를 경우 약 30억원의 인건비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공무원 인건비의 경우 매년 행정자치부가 제시하는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채용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6년 시의 기준인건비는 1조 3,834억 4천 2백만원으로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기준인건비의 약 97.3%를 활용하고 있음.
- 기준인건비 한도와 실제 소요액에 지나친 차이가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의 감액요구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복잡한 사정이 있으나, 예기치 못한 상황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수준에서 효율적인 정원관리 방안을 수립·추진해야 할 것임.

## 【참고자료】

# 관 련 법 규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함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23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하 "기본인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군·구와의 협의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

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기본인력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사항 등 협의결과를 알려야 하며, 협의결과를 통보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결과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보완·운영하여야 한다.

⑥ 기본인력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별정직 정원)** ①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경우는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되, 미리 각 직무분야별·상당계급별로 책정하되, 그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제26조(우대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일반직 9급



지방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직 8급과 9급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통합·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을 통합·운영함에 따라 9급 지방공무원을 8급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8급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9급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제27조(근속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운영할 수 있다.

1. 일반직지방공무원의 6급·7급·8급·9급
2. 삭제
3. 소방공무원의 지방소방경·지방소방위·지방소방장·지방소방교·지방소방사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을 통합·운영함에 따라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제28조(한시정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
- 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相計) 조정할 수 없다.
- ④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동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인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